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
- 1.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,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
 - 가.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.
 - 나.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(수입식품등수입·판매업만 해당한다).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다. 나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수입식품등 보관업

- 가.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(이하 "건물"이라 한다)의 위치 등
 - 1)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·화학물질,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수 입식품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.
 - 2) 건물의 구조는 보관하려는 수입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,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.
 - 3) 건물의 자재는 수입식품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.

나. 보관시설

- 1) 보관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류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 (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또는 구획(칸막이·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되어야 한다. 다만, 보관시설의 특수성으로 분리 또는 구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분(선·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되어야 한다.
- 2) 보관시설 내부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,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활어 수조 등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) 보관시설의 내부 구조물, 벽, 바닥, 천장, 출입문, 창문 등은 내구성, 내부식성

등을 가지고,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.

- 4) 보관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조류, 해충, 설치류,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, 내부에는 쥐・바퀴 등 해충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, 쥐트랩 등 방충・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방충・방서는 전문 방충・방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- 5) 보관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·유해가스, 먼지, 매연, 증기 등을 배출시 키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냉동· 냉장시설 등 보관시설의 특성 상 환기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) 보관시설은 폐기물 · 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7)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18℃ 이하,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 10℃ 이하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, 중앙제어실 또는 외부에서도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8)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.
- 9) 보관시설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0) 보관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,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상·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